

## 동반성장론(협력) 추가 약정서 (동반협력기업용)

### 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동반성장론(협력) 추가약정서</b> (동반협력기업용)</p> <p>제 1 조 (목적) ~ 제 15 조 (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) (기재생략)</p> <p><b>(신설)</b></p> <p><b>제 16 조 (정보제공의 동의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7 조 (면책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8 조 (이용수수료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9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b> (기재생략)</p>	<p><b>동반성장론(협력) 추가약정서</b> (동반협력기업용)</p> <p>제 1 조 (목적) ~ 제 15 조 (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)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6조 (지연이자 수취)</b>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“상생협력법”)」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하도급법”)」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①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「하도급법」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</p> <p><b>제 17 조 (정보제공의 동의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18 조 (면책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19 조 (이용수수료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20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b> (현행과 같음)</p>	<p>금감원 요청에 따른 「상생협력법」, 「하도급법」 안내 문구 판매 기업 약관 기재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2월 31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